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11월 30(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신상진, 이경훈, 김준혁, 정재영, 김민수 (9명)

■ 불참의원 : 김태훈, 고민석 (2명)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대학원
2.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경영대학원
3.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교육대학원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교육지원팀
5.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6.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7.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8.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총무팀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정보운영팀
10.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국제교류팀
11.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개정(안)	
12.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13.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공학혁신센터
1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15.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정보과학교육원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개정(안)	
17.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개정(안)	예비군연대
1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기획평가팀

나.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출(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위원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9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규정 개정】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및 제44조(학위종별) 개정
 - [별표1]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입학정원, 학위종별 개정
 - 인공지능응용학과(박사과정) 신설
- 기획평가팀장은 제3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인공지능응용학박사의 학위명칭 재검토 요청에 의해 재상정된 사안임을 설명하고 공학박사로 변경하는 검토안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은 인공지능응용학석사의 학위명칭도 “인공지능응용학석사”를 “공학석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또한 공학박사의 영문명칭도 추가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용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인공지능응용학석사의 학위명칭을 “인공지능응용학석사”에서 “공학석사”로 수정 가결하다.

2)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경영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3장 교과과정 : 제15조(교과목 폐강)
 - 제5장 학위논문 : 제28조(논문지도교수), 제31조(심사위원회 구성), 제33조(논문 심사방법), 제35조(논문심사평가), 제37조(학위논문제출).
 - 제7장 장학금 : 제43조(수혜대상자 및 지급 기준)
- 박수원 의원은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③항의 “특별임용교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묻고 이에 기획처장이 별도 규정에 정립된 용어임을 설명하고 범위에 대해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③항 단서 조항의 제한 규정의 취지에 대해 묻고 김진곤 의장은 논문 심사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의 취지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과 천성오 의원은 제37조(학위논문제출)의 “CD(디스켓)” 부분의 비현실적 규정임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있으며 시스템과 관련 규정 전반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다.
- 박수원 의원과 이건영 의원은 [별표2]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 기준에서 “군장학금”의 수혜율을 입학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수혜 대상자가 지원하는 시점에서 수혜액을 미리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자의적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교내 규정을 일괄 정비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별표2]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 기준에서 “군장학금” 부분은

관련 교내 규정을 일괄 정비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 가결하다.

3)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교육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10장 인증자격증 제62조(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
- 박수원 의원은 [별표4]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의 체계적 표현을 위해 자격 취득요건별로 보기 편하게 그룹화하여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교육대학원 교학팀장은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학칙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항, ②항 개정
 - 학칙 제65조(학위수여) 개정
 - [별표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 개정
 -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속의 지능형로봇학과 신설에 따른 개정
 - ⇒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별표2] 학과(부)별 수여학위 종별표
 -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속의 지능형로봇학과 신설에 따른 개정
- 박수원 의원은 입학정원이 없는 지능형로봇학과와 입학정원이 있는 로봇학부의 지능시스템전공 등이 학교 홈페이지에 같이 있을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본교에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시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 이에 교육지원팀장은 입학 자료에 표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5)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②항 4호 및 제9조(폐강) ①항 1, 2, 3호 개정
- 이건영 의원은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②항 4의 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 묻고 이에 교육지원팀장은 학생의 요구사항과 교무처의 행정실무 진행상 필요성에 의해 개정이 진행된 사항임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②항 4의 “12학점” 제한 규정은 책임시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화된 배경을 설명하다. 또한 김민수 의원, 박수원 의원은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9조(폐강) ①항 3의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②

4.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학년에 대하여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폐강) ①

3. 다음 각 목의 특정 교과에 한하여 교무처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가. 4학년 전공 교과목

나. 연계·융합 전공 교과목

다. 사업성 교과목 등

6)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4조(수강인원의 편성) ②항 개정

▪ 의원 전원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③항 개정

-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개정

▪ 의원 전원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직무수당 [별표 6]에 정부지원 사업단 부단장 추가

▪ 이건영 의원, 박수원 의원은 대학혁신사업단장과 정부지원 사업단 단장과의 차이에 대해 묻고 이에 총무팀장이 사업단의 규모, 예산, 기여 등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은 [별표6] 직무수당에서 "학과(부)장"의 직무수당 처우와 관련하여 업무 비중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학과장 처우는 현재 총장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박수원 의원은 [별표6] 직무수당의 체계적 표현을 위해 보직에 따른 순서정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별표 6] 직무수당

구분		지급액(원)	지급기준
총장		1,002,000	
교무위원	부총장	825,000	
	각 대학원장	361,000	
	각 대학장	361,000	
	각 처장	733,000	
	중앙도서관장	361,000	
	교육혁신원장	733,000	
	산학협력단장	733,000	
	정보과학교육원장	361,000	
부속기관	동해문화예술관장	320,000	※ 보직을 겸할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개의 직을 겸직할 경우 : 50% 추가 지급 나. 2개의 직을 겸직할 경우 : 25% 추가 지급 다. 3개의 직을 겸직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겸직에 따른 지급금액은 큰 금액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
	생활관장	320,000	
	캠퍼스타운사업단장	320,000	
	글로벌교육센터장	320,000	
기타	교수학습센터장	320,000	※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해당 직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장	320,000	
	광운MOOC센터장	320,000	
	학생상담센터장	320,000	
	인재개발원장	361,000	
부속교육기관	국제교육원장	320,000	※ 정부지원사업단 부단장의 경우 사업단 신설 시 보직수당 지급을 별도로 지정한 사업단 예계만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대학혁신사업단 단장	361,000	
	정부지원사업단 단장	320,000	
	대학혁신사업단 부단장	302,000	
	정부지원사업단 부단장	267,000	
	부학장	302,000	
	행정 부처장	302,000	
	산학협력단 부단장	302,000	
	정보과학교육원 부원장	128,000	
	교학부장	199,000	
	주임교수(주관교수)	121,000	
	학과(부)장	181,000	
	정보과학교육원 주임교수	121,000	
	인제니움학부대학 영역운영교수	121,000	
	센터장	181,000	
	언론사 주간교수	121,000	
	인증프로그램PD	181,000	
	교수사정관	199,000	
	팀장/실장	165,000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정보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표 웹메일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적용
- 호스팅 서비스 운영 업무 폐지

▪ 천성오 의원은 규정 개정의 관련 근거로 첨부된 “보안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는 과거 오래된 자료로 업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료 첨부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정보운영팀장은 수용하다.

▪ 이건영 의원은 현재 우리 대학의 정보시스템(메일, KLAS 등) 활용상 문제점의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정보운영팀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19조(정보운영팀) “3. 정보시스템 보안 유지 업무”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19조(정보운영팀)

1.~2. (현행과 같음)

3.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 보안 유지 업무

4.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보안 유지 업무

10)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국제교류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대외교류팀→국제교류팀
- 교환학생 선발절차 간소화(위원회 심의 생략)
- 교환학생 생활지도 간소화(학과장 정기지도→현지생활보고서 심사)

▪ 박수원 의원은 제5조(선발 및 포기 절차) ①항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김진곤 의장, 박수원 의원은 제15조(학생지도) ②항은 표현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5조(선발 및 포기 절차)

① 교환학생의 선발은 공개경쟁 원칙을 토대로 자격요건·해당 국어 시험·면접 등의 정해진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대외국제처장의 승인을 거쳐 국제교류팀은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와 대학원에 통보한다.

제15조(학생지도)

② 교환학생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현지생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교류팀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1)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개정(안)

- 국제교류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대외교류팀→국제교류팀
- 연수시행 절차 간소화(위원회 심의 생략)
- 학과 전공연수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 및 자비연수 신설

▪ 박수원 의원은 제11조의 2(자비연수)의 자비연수 개념과 규정 취지에 대해 묻고 이에 국제교류팀장이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연혁과 학생 요청 및 타 대학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규정화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자비연수의 악용 소지, 실익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국제교류팀장은 취지, 운영 방향(횟수 및 학점 제한) 등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11조의 2(자비연수)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의 의미와 정하는 시점, 방법 등을 묻고 이에 국제교류팀장은 해마다 총장 결재의 방식을 통해 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 국제교류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운영 세부 내용 변경
- 중도 입사 및 퇴사에 대한 규정 신설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김민수 의원, 박수원 의원은 제2조(용도)의 서술부분을 명확성, 간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이건영 의원, 박수원 의원은 제7조(선발기준)의 선발 순서의 명확성,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단서 조항 삭제 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제7조(선발기준)과 관련하여 국제교류팀장은 빛슬재와 인터내셔널하우스와 용도, 목적, 수용 학생수의 차이, 전략적 활용을 위한 규정화 등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원 전원은 규정 취지에 동의하다.

▪ 김진곤 의장은 제8조(입사 결격사유)의 "전염성"과 제12조(퇴사처분) "전염성"은 아래와 같이 "감염성"으로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2조(용도)

인터내셔널하우스의 용도는 우리 대학(학부, 대학원, 국제교육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관장부서 및 직원)

③ 인터내셔널하우스의 관리, 운영 및 입사가 허가된 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감, 생활조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제한) 인터내셔널하우스 시설의 이용은 입사생에 한한다. 다만, 인터내셔널하우스의 건립 취지에 합당하거나 우리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선발기준)

학기별로 선발하며 아래 순서에 의한다.

1. 어학연수생
2. 교환학생
3.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4.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5. 고학년
6.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제8조(입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3. 감염성 질환자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제12조(퇴사처분)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4. 감염성 질환자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13)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운영 규정 개정(안)

- 공학혁신센터 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별표 1] 전자정보공과대학 학과별 설치 프로그램 명칭'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프로그램 삭제
 -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의 '[별표 2] 학과별 공학프로그램 전공 졸업요건 지정교과목'에 해당 교과목 추가

- [별표 2]에 컴퓨터공학과 및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삭제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운영 규정 개정(안)

- 공학혁신센터 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의 '[별표 2] 학과(부) 공학프로그램 전공 졸업요건 지정교과목'에 해당 교과목 추가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5)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운영 규정 개정(안)

- 공학혁신센터 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의 '[별표 2] 학과별 공학프로그램 전공 졸업요건 지정교과목'에 해당 교과목 추가
 - [별표 2] 화학공학과 '캡스톤설계2' 교과목명이 2020학년도부터 '캡스톤설계심화'로 변경되어 표기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 정보과학교육원 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군입대자의 성적평가에서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시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한다는 내용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정비(폐강인원 조정, 학습비 납부 및 반환 등 기존 운영규정 내용 정비)
- 박수원 의원은 제6조(강의계획서) ①~⑤항의 배열 순서를 검토한 결과 ⑤항은 ②항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10조(수업방법) ①항 "비대면 방식" 표현은 "원격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팀장은 출석 기반과 원격 기반의 학점은행제의 특수성에 의해 비대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19조(군 입대자의 성적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불공정성, 학생 의견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다.
- 교육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의 준수와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2조(부정행위자 조치) ①항 "6. 남의 답안지를 훑쳐보거나 보여준 학습자"는

아래와 같이 "6. 남의 답안지를 훑쳐보거나 남에게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준 학습자"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6조(강의계획서)

- ①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는 매 학기 원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교·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평가인정을 받은 강의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강의계획서 작성 시 주별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수업일수 학기 당 15주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⑤ 강의계획서 내용과 수업 및 평가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19조(군 입대자의 성적평가)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 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22조(부정행위자 조치) ①

1.~5. (생략)

6. 남의 답안지를 훑쳐보거나 남에게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준 학습자

17)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일부 용어 변경(향토 방위 → 지역 방위)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내부 구성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간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세부화 (부가세 포함 월 10,000원/m²)
 - 서식 3. 공간사용료 납부 확인서 상 입금처 변경
- 박수원 의원은 공간사용료의 정의, 범위, 적정성에 대해 묻고 이에 기획처장과 기획평가팀장은 규정 취지와 함께 수익 규정이 아닌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한 제한적

자원의 활용 측면의 공간사용료임을 설명하다. 또한 김진곤 의장은 공간사용료의 유동적 부과 가능성에 대해 묻고 이에 기획처장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김민수 의원은 [별표 1] 공간 유형별 기준 면적 기준 사용료 관련 서술 부분과 신설되는 부분의 상호간의 표현의 정확성, 간결성, 적용의 용이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별표 1] 공간 유형별 기준 면적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사용기간을 초과한 공간 또는 신규 배정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월 10,000원/m²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2021년도 산학협력단 소위원회에 상정된 내부구성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수행을 위한 대응공간에 한하여 공간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월 10,000원/m²으로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위원회에서 별도 산정한다.)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조정팀장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출(안)】

▪ 김진곤 의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사유와 과거 위원 선출 방식을 설명하다. 각 주체별로 1인씩 총 3명을 추천 후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 아래와 같이 대학평의원회 추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하다.

구분	성명	비고
대학평의원회 추천	김진곤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태훈	노동조합위원장
	김준혁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6. 폐회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1년 11월 30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부 의 장 천 성 오 

평 의 원 이 건 영 

평 의 원 박 수 원 

평 의 원 이 경 훈 

평 의 원 신 상 진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김 준 혁 

평 의 원 정 재 영 

평 의 원 김 민 수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